



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의 규제

2

- 내부자 거래
 - ◆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(제172조)
 - ◆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현황 보고 (제173조)
 - ◆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(제174조)
- 시세조종행위의 금지 (제176조)
- 부정거래행위
 - ◆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(제178조)
 - ◆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(제178조의 2)
 - ◆ 공매도의 제한 (제180조)

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

3

- 회사 내부자가 6개월 내에 회사 증권을 매매한 후 매수하거나 반대로 매수한 후 매도하여 얻은 이익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회사에 무조건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.
-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은 임원, 직무상 미공개정보를 알 수 있는 직원 및 주요 주주.
- 단기매매차익의 계산은 매수 또는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1회의 매칭거래가 행해진 경우 매도단가에서 매수단가를 뺀 금액에 매수수량과 모두수량 중 적은 수량을 곱하여 산출한 다음 이 금액에서 해당 수량분에 관한 매매거래수수료와 증권거래세액 및 농특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이익으로 산정(선입선출법).
-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는 해당 법인에서 행사할 수 있지만, 주주도 법인을 대위하여 청구가능. 반환청구나 대위청구는 거래이익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.

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(제174조 제1항)

6

제174조(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)
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**미공개중요정보**를(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**) 특정증권등의 매매,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대통령령: 1~5호는 내부자, 6호는 정보수령자를 의미

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가 금지되는 자(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)

7

1. 그 **법인**(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) 및 그 **법인의 임직원·대리인**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
 2. 그 **법인의 주요주주**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
 3. 그 **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·인가·지도·감독,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**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
 4. 그 **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**로서 그 계약을 체결·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
 5.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**자의 대리인**(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)·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(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)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(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)
- **내부자**
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 → **정보수령자**

2015. 7. 1. 개정 자본시장법

15

- 처벌 범위의 확대
 - 구법에서는 회사 관계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은 자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, 2차 정보 수령자는 정범과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 가담행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처벌까지 받는 것은 아니었음.
 - 그러나 개정으로 2차, 3차 등 간접적으로 상장법인의 미공개정보를 취득하여 이용한 경우도 “시장질서 교란행위”(제178조의2)에 해당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(제429조의2),
- 내부자거래로 얻은 부당이익의 철저한 환수
 - 구법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벌금형 병과나 몰수, 추징 조항이 모두 임의적 병과 규정. 징역형을 택하면 부정거래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데 미흡.
 - 개정법에서는 징역형에 대해 벌금도 반드시 병과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익을 반드시 몰수 또는 추징.

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(제178조의2)

16

①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등의 매매등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그 행위가 제173조의2제2항, 제174조 또는 제17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가. 제174조 각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정보인 정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한 자 → 2차, 3차 수령자

나.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생산하거나 알게 된 자

다. 해킹, 절취, 기망, 협박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게 된 자

라.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정보인 정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한 자

2.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정보

가. 그 정보가 지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등 여부 또는 매매등의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것

나. 그 정보가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일 것

기업법무, 기술법무, 벤처기업, 계약분쟁, 손해배상, Claim, License, R&D 제휴계약

T. 02-591-0657 E. kkh@kasanlaw.com H. www.kasanlaw.com